

「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시내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재정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- 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「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」
「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,
-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